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6.8. 공포, 2021.12.9. 시행)으로 채용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등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27. ~ 10. 6.)

3) 행정규제 : 신설규제(안 제49조의3)

- 1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을 “다음 각 목의 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나. 7급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제25조제2항제1호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를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으로, “영어과목”을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 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제25조제2항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를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으로, “영어과목”을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를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으로, “영어과목”을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제25조제7항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를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으로, “영어과목”을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제2차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제35조제3항 중 “수급자 또는”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로 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이하 “합격취소등”)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심의위원회를 개회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격취소등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사·법·노동 분야 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위원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 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지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의 유죄판결과 당사자의 합격 또는 임용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등을 의결할 수 있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의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합격취소등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당사자와 임용권자(당사자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따라 임용추천되었거나 이미 임용된 경우)에게, 임용권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별표 1 보호란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분야) 및 7급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별표 3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 외교 분야)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 중 “전날”을 “전날(7급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로 한다.

별표 8 제1호 일반농업의 대상 자격증란 중 “유기농업”을 “유기농업, 화훼장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의료기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특수), 방사선위급감독자(5), 임상심리사 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일반)(3), 방사선위급감독자, 임상심리사 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	--	--	---	---	--

별표 12 일반농업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유기농업”을 “유기농업, 화훼장식”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하며, 같은 표 방역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하고, 같은 표 의료기술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보호
		직류	보호
5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경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전직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6급	공채	제1차 필수	헌법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경채	제1차 필수	헌법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전직	제1차 필수	헌법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승진	제1차 필수	헌법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7급	공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경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전직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8급	공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경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전직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9급	공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경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전직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

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분야) 및 7급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독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Test Deutsch als Fremdsprache)을 말한다.	수준 3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Goethe - Zertifikat)을 말한다.	GZ B2 이상
불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증시험 델프(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달프(Diplôme approfondi de langue française)를 말한다.	DELF B2 이상
러시아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토르플(TORFL)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플(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1단계 이상
중국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5급 210점

	(신HSK)	말한다.	이상
일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순다이하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7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2 150점 이상
스페인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레(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증시험 델레(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	B2 이상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 외교 분야)

가.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불어	스널트(SNULT)	70점 이상
	플렉스(FLEX)	850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DALF C1 이상
러시아어	스널트(SNULT)	70점 이상
	플렉스(FLEX)	850점 이상
	토르플(TORFL)	2단계 이상
중국어	스널트(SNULT)	70점 이상
	플렉스(FLEX)	8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HSK)	6급 180점 이상
일어	스널트(SNULT)	70점 이상
	플렉스(FLEX)	8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8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100점 이상
스페인어	스널트(SNULT)	70점 이상
	플렉스(FLEX)	850점 이상
	델레(DELE)	C1 이상

나.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불어	스널트(SNULT)	80점 이상
	플렉스(FLEX)	950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DALF C2 이상
러시아어	스널트(SNULT)	80점 이상
	플렉스(FLEX)	950점 이상
	토르플(TORFL)	3단계 이상
중국어	스널트(SNULT)	80점 이상
	플렉스(FLEX)	9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HSK)	6급 210점 이상
일어	스널트(SNULT)	80점 이상
	플렉스(FLEX)	9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935점 이상

스페인어	(JPT)	N1 1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스널트 (SNULT)	80점 이상
	플렉스 (FLEX)	950점 이상
	델테 (DELE)	C2 이상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7급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으로 외국어 선택 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에서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 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개정안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27조제1항 관련)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 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 1급(7)	임상병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 1급(3)	임상병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 2급(3)	임상병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개정안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식물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보건교육사 3급
	방역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직·보조기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제7조, 제25조, 별표3의2, 별표 1(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 제49조의3 신설규정 : 2021년 12월 9일
-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지 아니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 별표 8,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제7조(시험과목)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별표 3의2에 규정된 외국어에 한하여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2. 다음 각 목의 시험 ----- ----- ----- ----- ----- 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나. 7급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생략)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 ----- ----- ----- -----, -----.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1. ----- ----- ----- -----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

<신설>	과목-----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
2. 제1호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⑥ ----- -----, -----, -----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 ----- ----- -----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 -----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 -----.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 ----- ----- ----- ----- ----- ----- -----, -----.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1. ----- ----- ----- ----- -----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u>영어능력</u> 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u>영어과목</u>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신 설>	----- <u>영어능력</u> 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u>외국어능력검정시험</u>, 별표 4에서 정한 <u>한국사능력검정시험</u>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 ----- <u>영어과목</u>, <u>외국어 선택과목</u>, <u>한국사과목</u>-----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표 3의2에서 정한 <u>외국어능력검정시험</u>에서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u>외국어 과목</u>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	⑧ (생 략)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 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u>영어능력</u> 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u>영어과목</u>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④ (현행과 같음) ⑨ ----- 1. ----- ----- <u>영어능력</u> 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u>외국어능력검정시험</u>, 별표 4에서 정한 <u>한국사능력검정시험</u>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 <u>영어과목</u>, <u>외국어 선택과목</u>, <u>한국사과목</u>---
2. 제1호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u>영어능력</u> 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u>영어과목</u>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1. ----- ----- <u>영어능력</u> 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u>외국어능력검정시험</u>, 별표 4에서 정한 <u>한국사능력검정시험</u>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 <u>영어과목</u>, <u>외국어 선택과목</u>, <u>한국사과목</u>---

<신 설> 2. 제1호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표 3의2에서 정한 <u>외국어능력검정시험</u>에서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u>외국어 과목</u>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제2차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	④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격취소등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제35조(응시수수료) ①·② (생 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	④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격취소등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사·법·노동 분야 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위원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 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지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법제45조의3제1항의 유죄판결과 당사자의 합격 또는 임용 사이에 상		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등을 의결할 수 있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의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합격취소등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당사자와 임용권자(당사자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따라 임용추천되었거나 이미 임용된 경우)에게, 임용권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204